

1. 개정이유

보행자의 범위와 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, 자율주행시스템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「도로교통법」이 개정(법률 제 18491호, 2021. 10. 19. 공포, 2022. 04. 20. 시행)됨에 따라, 보행자의 범위와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를 규정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, 1월 중 실시 예정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·장치) 「도로교통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

제2조제10호 및 제17호가목5)에서 “행정안전부령으로하는 기구·장치”란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유모차
2. 보행보조용 의자차(「의료기기법」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)
3. 노약자용 보행기
4.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놀이기구 중 동력이 없는 놀이기구(어린이가 이용하는 것에 한한다)
5. 동력이 없는 손수레
6. 내려서 밀거나 끌면서 통행하는 이륜자동차,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전거
7. 도로의 보수·유지, 도로상의 공사 등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·장치(사람이 타거나 화물을 운송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

제2조의2를 제2조의3으로 하고,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) 법 제2조 제18의2호에 따른 “자율주행시스

템”은 부분·조건부 완전 또는 완전자율주행시스템 등으로 구분하며, 구체적인 내용은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11조에 따른다.

제14조의3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제2조(보행보조용 의자차의 기준)</u> 「도로교통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0호 및 제17호가목5)에서 “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”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. <u><신 설></u>	<u>제2조(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·장치)</u> 「도로교통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0호 및 제17호가목5)에서 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·장치”란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1. <u>유모차</u> 2. <u>보행보조용 의자차(「의료기기법」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)</u> 3. <u>노약자용 보행기</u> 4. <u>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놀이기구 중 동력이 없는 놀이기구(어린이가 이용하는 것에 한한다)</u> 5. <u>동력이 없는 손수레</u>

<신 설>

제2조의2(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)
(생 략)

제14조의3(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
복지시설의 범위)

①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서 “행
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
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시
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·노인의
료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
을 말한다.

6. 내려서 밀거나 끌면서 통행하는
이륜자동차,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
자전거

7. 도로의 보수·유지, 도로상의 공
사 등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·장치
(사람이 타거나 화물을 운송하지 아
니한 것에 한한다)

제2조의2(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)
법 제2조 제18의2호에 따른 “자율주
행시스템”은 부분·조건부 완전 또는
완전자율주행시스템 등으로 구분하
며, 구체적인 내용은 「자동차 및 자
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
칙」 제111조에 따른다.

제2조의3(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)
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② 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서 “행
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
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
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을 말
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통기획과	
연 락 처	02 - 3150 - 0659